

■ 일반 ■

알제리 전쟁 이후 아르키(Harki)의 프랑스 이주  
-프랑스의 모국송환자(rapatrié) 정책과 아르키-

문 중 현

I. 들어가며

1962년 3월 에비앙 협정(accords d'Évian)으로 알제리 전쟁이 끝나자,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에 거주하는 프랑스 시민의 모국송환 문제에 직면하였다. 알제리의 독립은 프랑스의 일부였던 알제리가 분리되어 독립된 주권국가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한 알제리에서 프랑스인들은 알제리 국민으로 고향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식민모국으로 이주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1954년 11월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FLN)이 이끄는 독립전쟁이 발발에서부터 모든 알제리 주민들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민간인 살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깊은 증오심을 낳았던 참혹한 내전을 경험한 프랑스인 대부분은 고향 알제리를 떠나는 선택을 했다. 1958년 수립된 프랑스 제5공화국에게 알제리 문제를 매듭짓는 전쟁의 종식과 알제리 독립의 인정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프랑스내 알제리-프랑스의 지지자들과 알제리에 사는 프랑스인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탈식민화(décolonisation)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의할 수 없는 난제였다. 따라서 탈식민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모국송환자(Rapatrié) 정책은 행정적,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1962년 마침내 약 90만 명의 피에-누아르(pied-noir)와 10만 명의 유대인이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한데 1954년 10월에서부터 1963년 7월까지 프랑스군을 지원하며 준군사조직에서 보충병으로 복무 하였던 베르베르인과 아랍인으로 구성된 20만~40만 명 규모로 추정되는, 아르키<sup>1)</sup>에 대한 적절한 송환계획은 마련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다. 100만 이상의 모국송환자 중, 아르키는 4만 2천여 명에 불과했고, 약 1만 명은 프랑스 정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알제리에서 탈출하였다. 1962년 7월~9월 사이 알제리 독립 정부가 아직 구성되지 못한 혼란한 상황에서 프랑스로부터 버림받은 수만 명의 아르키가 살해당했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문서에 따르면 1만여 명이라 추정되지만, 아르키 단체들은 약 15만 명이라 주장한다. 오늘날아르키 학살사건 자체를 외면해 왔던 알제리 역사가들조차 여러 자료에 근거해 약 7만 5천에서 10만 명 규모일 것으로 판단한다.<sup>2)</sup>

종전 이후 드골 정부는 모든 알제리 무슬림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 난민지위는 오직 알제리에서 독립 이후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피에-누아르에 대한 모국송환도 버거운 상황에서 행정적, 경제적 초과비용이 뒤따르는 알제리 무슬림에 대한 이주에 프랑스는 처음부터 소극적이었다. 난민자격 심사에서도부터 정착지원까지 아르키의 이주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아르키는 처음에는 준군사조직 아르카(harka)에 참여한 개인에게 붙여진 이름에 불과했지만, 넓게는 프랑스에 협력한 무슬림 전체를 의미한다. 종전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한 알제리 무슬림은 1970년대에는 이슬람 교인 프랑스 모국송환자(Français rapatriés de confession islamique:

1) 본 논문에서는 Harki를 아르키로 표기할 것이다. 아르키에 비해 하르키가 알제리인들의 발음에 일치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오늘날 아르키들이 프랑스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프랑스 시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프랑스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발음인 아르키로 표기하고자 한다. 이는 아르키가 알제리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2) Fatima Bensnaci-Lancou, Gilles Manceron,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jets* (Ivry-sur-Seine: Editions de l'Atelier, 2008), pp. 85-87.

FRCI)로, 1980년대에는 북아프리카계 모국송환자(Rapatriés d'origine nord africaine: RONA) 등으로 불렸으나, 오늘날에는 프랑스 무슬림 모국송환자(Français musulmans rapatriés: FMR) 혹은 아르키로 통칭된다. 이름에서부터 발생하는 의미의 혼용은 프랑스에서 아르키 문제를 굴절시켜 온 원인 중 하나였다. FMR은 프랑스로 이주한 알제리 무슬림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알제리 전쟁기 보충병으로 동원된 아르키 이외에도 프랑스 식민정부에 협력한 행정관료, 판사, 경찰, 국회의원, 사업가 등 알제리 엘리트가 포함된다. 대부분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징병된 가난한 농민군(paysans militarisés)이었던 아르키를 프랑스에 협력한 식민지 엘리트들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sup>3)</sup> 알제리전쟁을 연구하는 파리 8대학의 역사학자 아르비(Mohammed Harbi)는 “아르키는 알제리 전쟁기간 중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며 아르키가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진 것은 프랑스로 이주한 이후라고 강조한다. 아르키는 식민주의 협력자라기보다는 전쟁 이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알제리계 이주자공동체 중 한 집단의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4)</sup>

더욱이 아르키라는 이름을 둘러싼 혼란은 고향으로 돌아온 귀환자를 의미하는 ‘라파트리에(Rapatrié)’로 불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 고향인 알제리를 떠나 식민모국 프랑스로 이주한 것이 과연 귀환일까? 라는 단순한 질문은 지중해 건너 프랑스 본토가 아르키의 모국이 될 수 있는가? 혹은 프랑스인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으로 연결된

3) 아르키들 중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된 사람들도 있었고, ALN 출신의 포로들의 경우 아르키가 되거나 사형당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전향한 아르키 중 일부는 잔혹 행위로 명성을 날렸다. 자발적으로 입대한 경우에도 대부분 경제적 동기가 강했다. FLN이 양, 소 등 보유한 가축을 징발했을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복수를 위해 아르키가 되기도 했다. 아르키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십시오. 노서경, 「아르키(Harkis) 문제」,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 2권(2010), 31-36쪽; Michel Roux, “A propos des événements de l’été 1991, le casse-tête harki”, *Migrations Société*, vol.4, n.20(1992), p. 18.

4) Mohammed Harbi, “La comparaison avec la collaboration en France n’est pas pertinente”, in Fatima Bensnaci-Lancou, Gilles Manceron,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jets*, op. cit., p. 93.

다. 단테가 『신곡』 지옥편에서 “내가 그랬듯, 영혼이 배신을 저지르면 그 육신은 악마가 빼앗아 가고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모조리 악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오”라고 배신자들이 당하는 형벌을 묘사했듯이 아르키는 동족을 배신하고 학살한 식민주의 협력자로 알제리게 이주공동체에 서나 프랑스 사회에서 취급받아 왔다. 프랑스인들에게는 완전한 프랑스인이 아닌 무슬림 원주민으로, 알제리인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프랑스인도 아니고 독립한 알제리의 국민도 될 수 없었던, 프랑스와 알제리, 지중해 양안에서 버림받은 아르키에게는 프랑스 식민주의 역사의 모순과 알제리 전쟁이 남긴 상흔이 누구에게 보다도 많이 남아있다.

본 논문은 먼저 탈식민시대로 준비 없이 이행하게 된 프랑스가 추진한 모국송환정책을 검토하고, 이어서 아르키가 원주민 부대로 만들어지는 과정, 알제리 전쟁 중 그들이 직면했던 프랑스인, 알제리인으로서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탈식민화가 지녔던 난맥상을 분석하면서 아르키가 모국송환법에서 어떻게 배제되었고 식민모국으로 정착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제도적 차별을 검토할 것이다. 아르키가 알제리를 떠나 식민모국 프랑스로 이주하는 과정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자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자발적 선택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식민주의가 지녔던 인종차별의 질서, 즉 시민으로서의 차별과 배제를 감수해내면서도 프랑스인이 되려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였다.

## II. 모국송환정책과 알제리 전쟁

모국송환자란 단기간 혹은 장기간 외국에서 거주하던 사람 중 자연재해, 전쟁, 사회불안 등의 이유로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아 모국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모국송환자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민족해방운동의 결과로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가 독립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알제리 독립은 모국송환자의 지위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알제리 독립 이전인 1954년 인도차이나 약 4만 4천 명, 1956년 이집트 약 7천 명,

모로코 약 26만 명, 튀니지 약 18만 명 등의 모국송환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 수가 알제리보다 매우 적었다. 알제리 이외의 국가들에서 발생한 탈식민화 과정에서는 깊은 정치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착을 위한 지원에 큰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대규모 내전 혹은 독립전쟁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긴박한 모국송환정책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길고, 참혹한 전쟁의 양상을 보인 알제리는 달랐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전체 모국송환자 중 2/3가 알제리에서 귀환했을 정도로 이주의 규모가 컸다. 알제리 전쟁의 종전이 다가올수록 프랑스 정부에게는 알제리 거주 프랑스인에 대한 이주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결국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수용과 재정착에 관한 1961년 12월 26일 법(la loi du 26 décembre 1961 relative à l'accueil et à la réinstallation des Français d'outre-mer)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귀국송환자의 지위는 “정치적 사건의 결과로 프랑스의 보호령, 신탁통치령과 같이 이전 프랑스 주권 아래에 있었던 영토에서 떠나야만 하는 혹은 떠나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프랑스인”으로 정의되었다. 모국송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되기 이전부터 이 영토에 거주해야 했고 둘째, 이 영토가 독립했을 때 프랑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하며, 셋째, 독립과 연관된 직접적인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이 영토를 떠나야 하는 경우였다.

프랑스 정부가 관심을 둔 모국송환자는 알제리 프랑스인(Algérie française)으로 정의된 유럽인들로 무슬림이 아닌 사람(non-Muslim)을 의미하였다. 피에-누아르로 불린 90만 명에 달하는 유럽계 프랑스인과 12만 명에 달하는 알제리 유대인들이 주된 모국송환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알제리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던 반면 지중해 건너 프랑스는 그들의 삶과 인연이 적었던 낯선 땅이었는데 피에-누아르와 유대인들은 ‘토종 프랑스인(Français de souche)’이 아닌 알제리 프랑스인의 정체성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들은 때때로 식민모국의 프랑스인들에게도 다른 프랑스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주민에 대해 적대적인 프랑스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오늘날까지 강조하는 혈통과 땅의 신화는 프랑스인

이 아닌 프랑스인과 진정한 프랑스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sup>5)</sup>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탈식민운동 앞에서 프랑스를 다시 유럽화(Europeanization)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sup>6)</sup> 1957년 프랑스의 유럽경제공동체(Europena Economic Community: EEC) 참여는 이러한 유럽화의 결과물이었다. 알제리 모국송환자들은 ‘위대한 프랑스(plus grande France)’가 아니라 프랑스 제국이 해체된 다음 유럽의 일부로 전락한 프랑스의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민족정체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1961년 프랑스 정부와 FLN 사이에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모국송환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알제리 거주를 희망하는 프랑스인에 대해서도 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의 결과 알제리 독립 이후, 알제리에 거주하는 유럽인(Europeans), 즉 알제리-프랑스인은 ‘소수민족’(minority population)이 되었다. 알제리 프랑스인은 UN의 국제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소수민족으로 인정되어 비무슬림 알제리인의 지위가 부여된 것이다. FLN과 협상 중이었던 드골 정부는 알제리 독립 후 프랑스인들이 사유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 안심시키면서도 더 이상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 예고하였다. 비록 인구 규모에서는 소수였지만, 정치적 다수자였던 프랑스인들이 소수민족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들의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특권의 소멸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알제리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프랑스인의 수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다수는 모국송환을 선택할 것은 일찌감치 예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1년 봄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를 떠나는 모국송환자가 약 38만 명 규모에 그칠 것이라 예측하였다.

모국송환정책을 담당할 알제리부 장관(Ministre d'État aux Affaires Algériennes) 루이 조스(Louis Joxe)는 신중하면서도 은밀하게 프랑스인들의 이주계획을 수립, 실행하였다. 모국송환정책 초기 정부는 많은 수

---

5) 프랑스 민족주의가 강조한 혈통과 땅의 신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마은지, 『민족주의의 재발견』 (서울: 선인, 2016).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Maxim Silverman, *Deconstructing the Nation: Immigration, Racism and Citizenship in Modern France* (New York: Routledge, 1992).

의 프랑스인이 알제리에 남아있기를 원했고, 모국송환을 희망하더라도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국송환자는 사실 이주를 위한 약간의 보조금과 구호품을 지원받았을 뿐이었지만, 정부는 이주배상금 수혜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사람들의 출발을 제한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1961년 모국송환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총리龐피두(Georges Pompidou)와 모국송환부 장관 불랭(Robert Boulin)은 각부의 장관과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소집하였다. 초기 모국송환자들의 이주지역은 프랑스 본토뿐 아니라 과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도 포함되었다. 1956년 모로코가 독립하자 떠나야 했던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일찍이 소규모의 실험적 형태로 남미로의 이주가 추진되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프랑스 본토로 유입되는 모국송환자를 다른 국가로 정착시켜 이주의 흐름을 프랑스 외부로 분산시키고 싶어 하였다. 1962년 소규모의 가족이 브라질로 향했으나 정착지원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해 더 이상의 이주는 실행되지 못했다. 남미는 매력적인 이주지역이 아니었기에 알제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본토로의 귀향만을 희망하였다. 1962년 5월부터 본격적인 대규모의 알제리 탈출이 시작되었다. 모국송환자의 이동과 정착지역에 대한 통제는 엄격하게 시행되었는데 약 66.8%가 프랑스 남부에 정착하였다.<sup>7)</sup> 1962년부터 모국송환자의 정착에 필요한 건물과 토지, 즉 학교, 군부대 병영, 공장 건물, 종교시설물 등이 국가에 의해 수용되었고 1963년에는 약 3만 5천 개의 공공임대주택(HLM) 건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모국송환정책에서 아르키를 위한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알제리 전쟁에 대한 기억의 의무를 주장한바 있는 역사학자 비달 나께(Pierre Vidal-Naquet)는 1962년 겨울 이미 아르키가 모국송환정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고발하였다.<sup>8)</sup> 아르키에 대한 사료가 다른 모국송환자와 달리 뱅센느(Vieciennes)의 군기록보관소에서 보관되고 있을 정도로 아르키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특별하게 관리하였다.

7) 재인용. Choi Sung-Eun, *Decolonization and the French of Algeria: Bringing the settler colony home* (London: Palgrave, 2016), p. 57.

8) « La guerre révolutionnaire et la tragédie des harkis », Pierre Vidal-Naquet, *Le Monde*, 11-12 novembre 1962.

프랑스인이나 알제리인들은 흔히 아르키를 민족의 배신자, 기회주의자, 프랑스에 매수된 자, 콜라보(collabos)로 부른다. 알제리 독립운동가와 프랑스 반식민주의자에게서 알제리 전쟁은 내전이 아니라 ‘혁명’이었다. ‘프랑스의 알제리(Algérie française)’를 끝내고 알제리인의 알제리(Algérie algérienne)로 만드는 독립국가 건설은 혁명의 목표였다. 따라서 주권자를 억압하고 처벌하는 프랑스군과 피에-누아르, 그리고 식민지 협력자들은 혁명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57년 여러 건의 폭탄테러 혐의로 기소된 알제리 여성독립운동가 부이레(Djamila Bouhired)의 재판이 열렸다. 변호사 베르제(Jacques Vergès)를 비롯한 알제리 독립을 지원하는 반식민주의자의 적극적인 변호와 여론전으로 인해 반전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전쟁 중 발생한 고문과 학살사건이 알려지면서 군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 급격히 훼손되었다.<sup>9)</sup>

식민화 초기부터 프랑스 군부는 알제리 식민통치에 깊게 개입하였다. 1870년 제3공화정 수립 이후 군은 민간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알제리를 관리하였고 사하라 알제리의 경우 독립 전까지 군의 관할 지역이었다. 알제리 전쟁이 시작되자 알제리인들은 프랑스군의 토벌 작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동원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알제리 총독 레오나르드(Roger Léonard)는 알제리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농촌 지역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보충 경찰대로서 원주민 부대(goums civils)를 창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sup>10)</sup> 아르키 부대가 본격적으로 창설된 것은 1955년 지적이면서도 유연한 성품에다 정치적으로도 좌파로 평가받던 인류학자인 수텔(Jacques Soustelle)이 총독으로 임명되면서부터이다. 그는 알제리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1955년 9월 특별행정부대 SAS(Sections administratives

9) 프랑스 시민들과 징병의 대상이 되었던 청년들에게 알제리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고 추악한 식민지 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의 점령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해방자가 아닌 지배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때때로 FLN이 저지른 학살사건은 프랑스에 알려졌지만, 반식민주의자들은 군과 정부 당국이 조작한 사건이라거나,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로 생각하였다.

10) François-Xavier Hautreux, “L’engagement des harkis(1954-1962)”,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90(2006), p. 33.



spécialisées)를 만들었다. 400개의 분대로 구성된 이 부대에는 아랍어를 구사하고 무슬림의 풍습과 전통을 이해하는 장교와 현지 협력자로 고용된 아르키가 배치되었다. 농업, 교육, 건강, 건설, 사법 등 식민지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조직된 SAS에서 아르키는 군사적 임무보다는 행정적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이미 내전 상황 속에 빠져버린 알제리에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군의 토벌작전으로 모로코와 튀니지 국경 인접 지역으로 후퇴했지만, 약 4만 명으로 구성된 FLN의 군사조직 민족혁명군(Armée de libération nationale: ALN)은 기습과 매복공격 전술로 프랑스군에 역공을 취했다. 내전이 전국적으로 걸잡을 없이 격화되면서, FLN의 군사적 방향은 유럽계 식민자들에 대한 공격에서 FLN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 알제리인들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FLN의 ‘민족 배신자’에 대한 처형 방식은 매우 잔인하였다.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사자의 육체가 훼손당하면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참수하는 형태를 띤 처형은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반해 프랑스 군인과 민병대는 참수보다는 교수형을 선호하였다. 알제리 전쟁 기간 6천 명의 무슬림과 1천 명의 유럽계 프랑스인이 살해당했다. 폭력이 전국화, 일상화되면서 무슬림 알제리인들 사이에서도 적개심은 뿌리 깊게 자리잡았다. FLN 내부의 경쟁과 무질서로 인해 점령한 지역에서의 부과한 세금과 물자의 징발로 인해 무슬림의 불만도 커졌다. 마을을 점령한 FLN과 무슬림 사이에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1956년 극동아시아에서 정보장교로서 경력을 쌓은 살랑(Raoul Salan)이 알제리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군대가 상시 주둔하는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게릴라들이 장악하고 있는 농촌 지역을 탈환하고자 하였다. 군사전략에 따른 대규모 주민의 강제이주는 필수적이었다. 2백 35만 약 알제리 인구의 26%에 달하는 알제리인들이 2400개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수용소에 배치되었다.<sup>11)</sup> “조상의 땅에서 뿌리가 뽑힌 채 마치 양처럼 갇혔다”라고 회상하는 아르키는 이 시기부터 수용소에 억류되었고 이러한

11) Vicent Crapanzano, traduit. Johan-Frédéric Hel Guedj, *Les harkis: Mémoires sans issue* (Paris: Gallimard, 2012), pp. 63-64.

수용소 생활은 프랑스로 이주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수용소에서 범죄자 처럼 심문을 받고 농사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소득은 얻을 수 없었다. 조금밖에 되지 않는 배급품으로 연명해야 하는 수용소 생활은 가장이었던 다수의 무슬림 남성들을 아르키로 만들었다. 농촌과 달리 도시 외곽지역에서 활동하는 FLN은 프랑스 식민지 정부의 심각한 골칫거리였다. 약 8만 명이 거주하는 카스바(Casbah)는 FLN 활동의 거점으로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였다. 1957년 1월 마쉴(Jacques Massu) 장군이 주도하는 도시 게릴라를 제압하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군사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FLN을 굴복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불법적인 감금, 고문과 잔혹행위 등을 사용함으로써 프랑스군의 사기와 위상은 추락하였고, FLN의 지지를 확산시켰을 뿐이다. 또한 군은 FLN 조직원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주민을 처벌해 아동, 부녀자, 노인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켰다.

1958년 살랑의 후임자 샬르(Maurice Challe)는 새로운 방식의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는 헬리콥터를 활용한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해 FLN의 거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형과 FLN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르키의 필요성을 높였고, 아르키는 이제 2만 6천 명에서 6만 명에 달했다. 군사적 필요성과 함께 비정규 군협력자로 아르키가 소집된 이유는 프랑스 군대가 무슬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 최소한 FLN에 가담하는 인원을 줄이는 효과는 나타났다.<sup>12)</sup>

12) 원주민 보충병으로 구성된 부대 아르카(harka)는 부대 운영과 모집 주체에 따라서 크게 5개로 구분된다. 첫째, 1955년 1월 내무부 장관 프랑수와 미테랑에 의해 설립된 다수가 전쟁에 참전했던 예비역으로 구성되어 농촌지역에서의 치안업무, 경찰보조 업무를 담당한 농촌보호 기동부대(Groupes mobiles de protection rurale: GMPR)이다. 전형적인 보충대인 이 부대에는 민간인과 군인이 섞여있었다. 알제리인들의 반란에 맞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검문, 순찰,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1958년 안전기동부대(Groupes mobiles de sécurité: GMR)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대원들은 부대에 남거나 경찰 소속의 공화국 보안 기동대(Groupes mobiles de sécurité: CRS)로 흡수되었다. 둘째, 1955년 9월에 만들어진 모그아즈니(moghazni)로 불리기도 한 모크아즈니(mokhazni)이다. 이 부대는 알제리 전쟁 중 프랑스군이 설치한 지방행정 기구(Section administrative spécialisée: SAS)와 이후 재편된 지방행정기

아르키 부대에는 프랑스화된 알제리 원주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부대도 있었다. 이러한 아르키 부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부알람(Saïd Boualam)으로, 알제리 서남부 출신이었던 그의 부족은 일찍이 프랑스 식민정부에 협력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부알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튀니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싸운 군인이었으며, 1945년 이후에는 프랑스 국회의 부위원장까지 역임한 알제리-프랑스를 대표하는 명사였기에 부족 사람들을 규합해 전투부대를 창설하였다.

프랑스군에 협력해 군사작전을 수행한 아르키 부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아르키를 든든한 실질적 협력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1956년 4월 알제리 총독 라코스트(Robert Lacoste)는 아르카 창설, 조직운영, 무장에 대한 원칙을 “질서유지 임무를 부여받은 임시부대”로 규정하였다. 그는 아르카를 무슬림 군인으로 편성된 게릴라전에 대항하는 독립적이며 프랑스 장교의 지휘를 받는 부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부대 운용원칙에 대해 군사령관 살랑은 알제리인으로 구성된 부대는 프랑스 정규군을 보조하는 제한된 임무와 복무기간이 부여되는 보충부대로 남아야 한다면서 총독의 정책에 반대하였다. 특히 프랑스 장교들은 아르카를 신뢰하지 않았다. 원주민만으로 구성된 부대는 프랑스를 배신해 충구를 자신들을 향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충기와

---

구(Section administrative urbaine: SAU)를 보조하는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였다. 인구조사, 세금, 선거,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의 행정적 역할, 기간 시설 건설, 주거, 농업개발 등 경제적 역할, 주민감시와 정보수집 등의 군사적 역할, 보건, 교육, 청소년 정책 등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준군사 조직이었기 때문에 주로 방어적인 임무를 담당했으나 토벌작전에도 동원된 이 부대는 알제리인들을 강제수용소로 이송하는 정책이 실행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1956년 45세 이상의 피에-누아르로 구성되었으나 1958년 알제리 무슬림도 부대의 대원으로 받아들인 국토부대(Unités territoriales: UT)이다. 1960년 유럽인과 무슬림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부대가 해산되기 전까지 공공시설물, 도로의 보호, 수송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넷째, 1956년 8월 알제리 군사정부에 의해 창설된 자경단(Groupes d'autodéfense: GAD)이다. 여러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모집된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 부대는 다른 부대와 달리 급료를 받지 않았고 무장 상태도 열악했다. ALN의 공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다섯째, 프랑스 군에 복무한 하급 보충병이다. 가난하고 문맹이었던 농민 출신인 이들 중 전투에 참여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전투병의 병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요리, 세탁, 쓰레기 수거 등 잡역에 동원되었다. 프랑스 군과의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지역법의 적용을 받았으며 1961년이 되어서야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복무기한이 정해졌다.

탄약의 관리권한은 오로지 ‘토종 프랑스인(Français de souche)’ 군인에 게만 부여했다. 무슬림 병사들에게는 자동소총, 기관총, 자동권총의 소지가 금지될 정도였다. 프랑스군은 정규군 처우를 해주기보다는 임시적인 임무를 부여해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드골 역시 알제리 무슬림의 배신을 우려했기에 ‘형제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에 아르카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sup>13)</sup>

프랑스 정부의 아르카에 대한 명확한 운용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감시, 방어, 보호 등의 임무만 부여될 것이라 했지만, 실제 군사작전에 투입된 아르키에게는 다양한 임무가 지휘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부여되었다. 알제리 빨치산이라 할 수 있는 펠라그하스(fellaghas)에 맞서기 위해 아르키는 산악지형의 전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도시에서는 FLN 점조직을 색출하기 위한 정보전에서 활용되었다.<sup>14)</sup> 카스바의 경우 주민의 약 30~40%가 이들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차라리 프랑스 군인에 의해 심문받을 것을 선호했을 정도로 고문에서의 아르키가 보여준 잔혹성은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아울러 지중해 건너 파리에서는 경찰청장 파퐁(Maurice Papon)이 만든 경찰력을 보조하는 파란군모(calots bleus)가 이름을 널리 알렸다. 알제리에서 충원된 250~400명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잔혹한 고문행위로 악명을 떨쳤다. CRS와 비슷한 특별한 복장을 하고 프랑스 장교의 명령을 따르며, 파리 13구, 14구, 외곽 판자촌에 거주하던 알제리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감시와 탄압에 앞장섰다. 알제리와 튀니지로 FLN 지원금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스파이로 활약하였고, 1961년 10월 17일 학살사건에도 동원되었다. 전후 부대가 해산되자 부대원들은 프랑스 경찰에 편입되어 그 지위를 보장받았다.<sup>15)</sup> 파란군모 부대에 의해 약 1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알

13) Fatima Bensnaci-Lancou, Gilles Manceron,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jets*, op. cit., p. 43; Vicent Crapanzano, *Les harkis: Mémoires sans issue*, pp. 95-96.

14) 노서경, 「아르키(Harkis) 문제」, 38-44쪽.

15) 1961년 리베라시옹(Libération)의 기자 폴레트 페쥬(Paulette Péju)는 『파리에서의 아르키와 북아프리카 아랍인의 박해(Les Harkis à Paris et Ratonades à Paris)』에서 파란군모 부대의 실체를 짚은 두 권의 책으로 폭로하였다. 그는 알제리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용병에 불과한 집단으로 알제리를

제리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최악의 내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 장교들에게 아르키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오로지 하루살이 삶에 만족하는 날뽀팔이하는 농민으로 구성된 용병일 뿐이었다. 신뢰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아르키는 늘 하사관에게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다. 알제리 국방안전부에 따르면 알제리 전쟁 말기 다수의 아르키들이 반란을 획책하거나 FLN과 내통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FLN의 구성원이 아르키로 위장해 프랑스 부대에 활동하였다. 1959년에는 한 달에 20건 이상 반란계획이 적발되었으며, 1961년에는 한 달에 27건으로 증가하였다.<sup>16)</sup> 결국, 전쟁 기간 프랑스군은 아르키를 충성스러운 공화국의 병사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못했다.

### Ⅲ. 예비양 조약과 아르키 학살

1960년 알제리 위원회(Comité des Affaires Algériennes)가 수립된 이후 프랑스 대통령과 장관들은 전쟁의 종결 기운이 무르익어 갔다. 1961년 1월 드골 정부가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알제리의 자주적 결정(autodétermination en Algérie), 즉 알제리 독립을 프랑스 본토인구의 75%, 알제리 인구의 69%나 되는 투표자가 찬성하자 종전의 길이 열렸고 협상은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프랑스군과 보충병의 수는 약 18만~21만에 달했다. 1961년 프랑스와 FLN의 평화협정 체결이 다가오면 올수록 약 120개의 폭탄이 터질 정도로 알제리에서 프랑스의 철수를 반대하는 움직임 또한 강해졌다. 이른바 식민지 ‘정착자 주권론’(Settler sovereignty)을 내세우는 알제리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결성한 단체들의 활동은 파업, 시위

---

배신하고 얻은 대가로 돈을 벌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알제리 독립을 지지했던 프랑스 좌파들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페귀의 저작은 아르키의 반인권 행위를 잘 보여주지만,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프랑스 군, 경찰의 책임과 지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FLN과 아르키 양쪽 모두에게 북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종적 스트레오타입이 활용되어 비난의 근거가 되었다.

16) François-Xavier Hautreux, “L’engagement des harkis(1954-1962)”,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90(2006), p. 40.

등에서부터 폭동, 테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958년 7월 제5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드골은 알제리에서 96%의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FLN과의 협상으로 알제리 프랑스를 배신한 그에 대한 실망감, 적대감은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하였다. 1962년 3월 18일 예비양협정이 체결된 후 피에-누아르의 이주가 본격화되어 6월에만 3십 5만 명이 프랑스로 귀환하였다. 이후 약 1년 동안 100만여 명이 알제리를 떠났다. 부유한 피에-누아르는 알제리에서의 재산을 국외로 옮길 수 있었지만 가난한 백인(petit blanc)은 맨몸으로 프랑스에 도착하였다.<sup>17)</sup>

7월 국민 총투표에서 99% 이상이 알제리 독립과 종전에 찬성하게 되면서 전쟁의 끝은 공식화되었지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소문이 알제리에서 퍼졌다. 프랑스군은 무슬림 병사들의 탈영을 우려하였는데, 실제로 ALN에 가담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슬림 병사의 수는 늘어났다. FLN은 만일 혁명에 가담한다면 형제애를 발휘해 아르키를 사면할 것이라 선전했지만, 아르키의 미래는 불투명 해져갔다. 프랑스군은 지급된 무기가 FLN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무장해제에 적극적이었다. 보충병 복무경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보복을 염려하기도 했지만, 무장해제는 1961년 초부터 점차 진행되어왔다. 1962년 3월 20일 프랑스 정부는 아르키에게 3가지의 선택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프랑스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전 복무기한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소 9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프랑스로의 이주를 위한 교통편도 제공되지 않는다. 둘째, 복무기한과 경력에 따라 500~2000프랑의 특별수당을 받고 즉시 전역한다. 셋째, 6개월 동안 결정을 위한 유예기한이 허용할 테니 그 동안에도 비군사 조직의 보충병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약 1,500여 명은 즉시 첫 번째 제안을 받아들여 프랑스로의 이주를 꿈꿨고, 대다수의 아르키는 두 번째 제안을 수락하였다. 4월이 되자 약 98%의 아르키를 무장해제 되었고, 약 60%에 달하는 24,397명 아르키가 제

17)이용재, 「에비양협정 50주년을 넘어」, 『역사비평』, 111호(2015, 5), 44쪽.

대하였다. 결국, 1962년 3월~1963년 11월 사이 32,187명 약 80%의 아르키가 해고되었고, 약 11% (4,549)는 6개월간의 복무를 선택했다. 그리고 8.2%인 3,383명이 프랑스 정규군에 편입되었다. 한편, 이러한 아르키의 선택은 완전히 자율적 않았는데 때로는 프랑스군의 명령에 따라 실행되기도 하였다.<sup>18)</sup>

무장해제를 당했을 때 아르키는 FLN의 학살을 피해 많은 서류를 준비해 난민으로 인정받아야만 난민캠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들은 전쟁 이전의 상태인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며 가족과 친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토지구매에 대한 보상금, 정부 공공 작업장에서의 노동, 주택 수리 보조금, 등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막연히 기대하였다. 1962년 4월 알제리의 상황은 혼돈이었다. 종전을 위한 평화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기간에는 아르키에 대한 처벌이나 살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종전이 확정되어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학살이 시작되었다.<sup>19)</sup> 프랑스 내무부는 자경단과 ‘옛 반란군’에 의해 치안이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양 협정은 아르키의 안전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보장도 해주지 못했다. 비록 종전 이전의 행위로 인한 “경찰과 사법부의 처벌 혹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예비양 협정의 2장에는 명기되어 있었지만, 이 조항은 전혀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민간인 보호에 관한 3장 즉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이든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이든 지역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이든 알제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기되었으나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었다.

내전 상황이 격렬해지면 적대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적으로 간주된 사람을 살해에는 강렬한 증오를 동반하기

18) Vicent Crapanzano, *Les harkis: Mémoires sans issue*, p. 113.

19) 1961년 7월 2주(Wilaya II)에서 유폐된 유인물은 자유를 위해 싸운 전사들은 모든 아르키의 목을 베거나, 폐지처럼 보상 없이 일하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또한 FLN의 언론 담당부서는 프랑스 식민정부에 협력한 아르키들에게 완전한 항복과 속죄를 요구하였다. “프랑스는 아르키를 버렸다”라고 프랑스로 이주한 수많은 아르키들이 한결같이 증언한다. 그들은 프랑스를 믿었으나 프랑스는 그 믿음을 저버렸고 비열한 배신을 했다고 느낀다. 또한 프랑스가 알제인들의 아르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했거나 혹은 방관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이다. 적은 절대 같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못할뿐더러 해서도 안 되는 의무가 생겨났다. 공개처형, 고문, 약식처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학살을 아르키와 그 가족들은 피해 가지 못했다. 공개적인 고문은 전국에서 발생하였다.<sup>20)</sup>

아르키의 학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는 여전히 논쟁적 질문이다. 학살당한 사람의 수와 노동수용소, 교도소 등의 존재를 고려해 봤을 때 학살은 단순히 대중의 충동적인 분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LN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에서 독립을 이끈 정치지도자들이 민족적인 정화, 순수성의 회복을 위해서 학살을 방조, 묵인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sup>21)</sup> 또한, 학살은 알제리 내전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와 맞선 독립전쟁은 한편으로 알제리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내전 상황을 초래하였다. ‘알제리 민족주의 운동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MNA)’과 FLN 사이에 독립을 둘러싼 노선투쟁은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양측 모두 상대방 진영이 이용하는 카페에 폭탄을 설치해 살해하는 이른바 ‘카페전쟁(guerre des cafés)’으로 말미암아 약 5천 명의 알제리인이 사망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1954년 11월 1일 만성절 봉기로부터 알제리 전쟁은 프랑스군과 맞선 독립전쟁이지만, 또한 알제리인들 사이의 내전이기도 하였다. 다수의 학살은 종전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LN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내전은 독립과 함께 종결

---

20) 알제리 전쟁에서 발생한 고문과 종전 이후 아르키에 대한 고문은 그 성격에서 차이가 난다. 전자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밀실에서 은밀하게 수행되는 행위이자 국가폭력이라면 전후 아르키들에게 가해진 고문은 고문을 행하는 시스템도 목적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해자가 있었고 공공연히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해 수행되었다. 여기에는 사회질서, 민족정체성, 권력의 과시를 위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동반한 죽음이 목적이었다. 아르키는 고문과 더불어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여장을 한 아르키는 거세된 존재로서 무능력하고 동물과 같이 취급받았기 때문에 아동과 여성의 폭력 앞에서도 무력하였다. 사망한 아르키는 마을의 공동묘지에 매장되지 못하고 외곽에 버려졌다. 이는 아르키가 완전히 망각되는 대상이자 마을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의미였다. Vicent Crapanzano, *Les harkis: Mémoires sans issue*, pp. 129-131.

21) 알제리 전쟁이후 형무소와 강제노역소에 수감된 아르키에 대한 자세한 역사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Fatima Besnaci-Lancou, *Des harkis envoyés à la mort: Le sort des prisonniers de l'Algérie indépendante(1962-1969)* (Paris: Editions de l'Atelier, 2014).



되지 않았다. 뒤늦게 ALN에 가담한 알제리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충성심을 증명하고자 학살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알제리 전쟁에서 폭력은 군사적 전략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공포를 적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행사되었다. 이는 프랑스군이나 FLN 모두 공유하는 특성이었다. 종전 이후 내전 속에서 태어난 폭력성은 아르키를 향해 발산되었다.

5월 알제리에서 프랑스로의 망명을 신청하는 아르키의 수가 3,500에서 7,300명으로 증가하였다. 6월 말이 되자 신청자는 10,500명에 달했고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욱더 늘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아르키 망명 신청자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인종적 선입견 때문에 주저하였다. 드골은 1959년 3월 “무용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노란 프랑스인, 검은 프랑스인, 갈색 프랑스인이 있는 것은 좋다. 이들은 프랑스가 모든 인종에게 열려있으며 보편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작은 소수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는 더는 프랑스가 아니다. 우리는 먼저 유럽의 백인 인종이며, 그리스, 라틴문화 그리고 기독교권이다”<sup>22)</sup>라고 선언할 정도로 프랑스의 인종적 순수성이 유지되길 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아르키의 망명신청 이유를 “미래에 다가올 통합을 위해 FLN과 가까웠던 몇몇 아르키 혹은 모그하즈니들이 프랑스 정부의 보호를 받는 조건을 선호”한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sup>23)</sup>

또한, 비밀군사조직(Organisation Armée Secrète: OAS)에 가담하였던 장교들을 중심으로 알제리연합(Association des anciens des Affaires algériennes: AAAA)이 결성되자 프랑스 정부는 깊이 우려하였다. 이들이 프랑스로 이주하려는 아르키를 동원해 군사적 위기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피가로』, 『르몽드』를 비롯한 신문들도 아르키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OAS의 활동의 지원할 수 있기에 아르키의 이주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키에 대한 학살이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서도 프랑스의 대

22) Alain Peyrefitte, *C'était de Gaulle* (T. I, Paris: Fayard, 1994), p. 52.

23) 재인용, Katia Khemache, *Harkis, un passé qui ne passe pas* (Morlaàs: Cairn, 2018), p. 23. Rapport de cette commission réunie le 26 juin 1962 à Rocher-Noît.

치는 미온적이었다. 알제리 독립 이후 치안의 유지에 프랑스는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알제리에서 학살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알제리 신정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었다. 드골은 기본적으로 알제리인들은 모두 독립된 알제리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월 국무회의에서 “알제리 정부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든 무슬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프랑스군과 행정부의 협력을 통해 수립된 공식적인 프랑스 무슬림 이송계획에서 귀환 대상자는 몇천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약 1만여 명의 아르키와 그 가족들이 프랑스 군부대로 수용되었다.

7월 3일 독립선언일에서부터 9월 20일 총선거일까지 납치, 구금, 폭력, 학살이 삽시간에 모든 알제리에서 발생했다. 무정부 상태와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 피에-누아르와 배신자 아르키에 대한 살해가 빈번해 졌다.<sup>24)</sup> 참혹한 7년간의 전쟁을 종결짓고자 2년간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경주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학살이 발생했을 때 드골은 프랑스군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알제리에서 프랑스군의 군사 활동은 예비양 협정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학살을 막기 위한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하라 지역의 유전개발에 관심이 많았던 프랑스는 독립국 알제리와의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프랑스 정부로서는 아르키보다는 전례 없는 규모로 알제리에 거주했던 모든 프랑스인, 즉 피에-누아르를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고 모국송환자가 늘어날수록 발생하는 이주비용만을 매우 걱정하였다.<sup>25)</sup>

1962년 3월 8일 국방부 장관 메스메르(Pierre Messmer)는 국무회의에서 “모든 프랑스의 시민, 유럽인이든 무슬림이든 자신들의 재산과 수익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알제리를 당장 떠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sup>26)</sup> 알제리 고등판무관은 무슬림 귀환자 명

24) Guy Pervillé, *Les accords d'Évian (1962) – Succès ou échec de la réconciliation franco-algérienne (1954-2012)* (Paris: Armand Colin, 2012), p. 131.

25) Chantal Morelle, “Les pouvoirs publics français et le rapatriement des harkis en 1961-1962”,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83(2004), p. 110.

26) 재인용, Katia Khemache, *Harkis, un passé qui ne passe pas*, p. 24.

단의 작성과 귀환 준비 업무에 착수하였고, 프랑스군은 운송수단과 탑승지의 안전을 확보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프랑스 정부를 비롯해 대중의 여론은 알제리 전쟁이라는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싶었다. 5월 5일 알제리부 장관 족스는 프랑스가 아르키의 귀환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건, 정치적 차원에서건 이 문제를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요청을 파악할 것, 실제로 그 사람이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분간하는 것은 어려운 행정업무입니다. 모국의 땅으로 이주하는 이러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이주자들이 국가전복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 개인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프랑스 영토 내에서 분산시켜야 하고 농업 분야에서 재취업 시켜야 합니다.”<sup>27)</sup>

결국, 프랑스 정부는 ‘은밀하게’ 아르키 귀국송환자의 대상과 수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정착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분산시켜’ 통제하려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귀국송환자 정책은 아르키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의 내무부 장관 프레이(Roger Frey)는 OAS와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슬림과 피에-누아르의 이주는 엄격하게 통제될 필요가 생각하였다. 아르키 이주를 우려하는 견해는 국방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널리 공유되었다. 국방부 장관 메스메르는 “모국 프랑스에 도착한 옛 아르키 출신의 여러 그룹이 최근에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차 검증된 정보에 의하면 예상치 못한 이들의 이주는 몇몇 SAS 장교의 개인적인 요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sup>28)</sup>라며 알제리에서 아르키가 출발한 상황에 대

27) 재인용. Chantal Morelle, “Les pouvoirs publics français et le rapatriement des harkis en 1961-1962”, p. 114. Archives Nationales, fonds 199910467 art 2, Note du ministre chargé des Affaires Algériennes pour le directeur général de la sûreté nationale en date du 3 mai 1963.

28) 재인용, Katia Khemache, *Harkis, un passé qui ne passe pas* (Morlaàs: Cairn, 2018), p. 38. Télégramme du ministre des Armées Pierre Messmer aux préfets le 12 mai 1962.

한 즉각적인 조사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장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5월 15일 프레이는 알제리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준비되지 않은 아르키의 이주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었다. 그는 “프랑스 모국에는 특별히 위협에 노출된 제한된 사람만, 사전에 귀국송환부와 협의에 따라 (프랑스에서 알제리로) 재이주 할 수 있는 사람, 프랑스에 도착했거나, 매우 부정적인 상황인 모국에 입국할 준비가 된 아르키 그룹”들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sup>29)</sup> 최종적으로 아르키 난민의 이주에 대한 정책은 모국 송환부 장관 불랭(Robert Boulin)에 의해 수립되었다. 1962년 5월 15일 그는 ‘위협받고 있는 프랑스 무슬림에 대한 조사’,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귀환 허가를 위한 명단 작성 발송’, ‘프랑스 모국에서의 정착과 사회복귀’라는 아르키 이주정책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 IV. 아르키의 프랑스 정착

프랑스 정부는 아르키의 모국송환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알제리 피식민지인에서 난민이 된 아르키 이주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태도는 당시 프랑스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군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프랑스군 내부, 징병된 병사들의 귀환, 3천여 명의 프랑스군 사망자, 피에-누아르의 대규모 이주와 정착, OAS의 쿠데타 위협 등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프랑스를 뒤흔들었다. 1962년 7월 국무회의에서 드골은 “모국 송환자의 지위는 명백히 무슬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들이 경우는 난민이 될 수 없다”라며 아르키의 이주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르키의 이주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962년 3월~4월 사이 프랑스 정부는 아르키 이주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에 집착하였다. 정치인, 공무원, 사업가 등 프랑스 식민정부에 협력하였던 소수의 엘리트층과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받는 상황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몇천 명 규모의 난민만을 받아들였다. 두 번째 시기인 여름부터는 학

---

29) *ibid.*

살과 박해가 심해지면서, 군 장교들의 제안에 따라 가족 단위의 아르키에 대한 이주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sup>30)</sup> 아르키는 프랑스 무슬림, 무슬림 난민(Muslim refugees) 혹은 단순한 난민(refugees)으로 분류되었는데 정부는 모국송환자로서 아르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배제하려 하였다.

프랑스화된 알제리 원주민 엘리트들은 식민지 시절에서부터 특권을 부여받았고 프랑스와의 사회적, 인적 관계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로의 이주, 정착, 통합에 유리하였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아르카 지휘관 부알람은 5월 18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 남부 론 강 하구의 카마르그(Camargue)로 수월하게 이주하였으며, 그를 따라던 사람들도 이곳에 정착해 7백 명가량의 마을을 형성하였다. 사업가, 정치인, 공무원 등의 경력을 가진 유력자는 남서부 도르도뉴(Dordogne)에 마련된 라르작(Larzac) 수용소로 정착하지 않았다. 엘리트층과 다수의 아르키 모국송환자들의 처우는 입국할 때부터 달랐다.<sup>31)</sup>

1962년 4월 귀국송환부 장관 블랭은 대규모 귀국송환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수용위원회를 모든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지사에게 정착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임하였다. 6월 프랑스로 이주하는 무슬림 프랑스인을 위한 인도차이나, 무슬림 프랑스인부(Service des Français d'Indochine et Musulmans: SFIM)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설립되어 수용소에 대한 통제가 원활해 졌다. 전국적으로 수용소 설치를 위한 후보 지역과 수용 가능 인원에 대한 조사 작업이 시작되었고 임시주거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가 수용되었다. 하지만 건설된 수용소는 임시 시설에 불과하였다. 1962년 8월이 되어서야 장기적인 수용시설 설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된 다음에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수용소와 촌락이 건설되었고 사회 복귀를 위한 취업 알선도 귀국송환부에 의해 준비되기 시작했다.

알제리 프랑스 무슬림 귀환자는 프랑스로의 이주를 스스로 선택하고 준

30)Chantal Morelle, “Les pouvoirs publics français et le rapatriement des harkis en 1961-1962”, p. 118.

31)Fatima Bensnaci-Lancou, Gilles Manceron,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jets, op. cit.*, pp. 113-114.

비해 실행한 사람들과 프랑스 군에 의해 이송된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약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sup>32)</sup> 이들은 피에-누아르와 함께 섞여서 때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출입국을 통하지 않고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후자의 경우, 지중해를 건넌 사람들은 파리, 릴, 보베 등 북부의 산업도시에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임시수용소에서 거주하였다.

1962년 6월부터 약 4만 명의 아르키와 그 가족들이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라르작(Larzac)과 부르그 라스틱(Bourg-Lastic)에 마련된 임시 수용소에 도착하였다. 군사시설이었던 이곳에 북아프리카계 프랑스인(Français de souche nord-africaine: FSNA)들의 임시거처가 만들어졌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아르키 난민이 발생하자 피레네 지역의 리베살트(Rivesaltes), 생 모리스 랄드와즈(Saint-Maurice-l'Ardoise), 비아(Bias) 그리고 라 리 르 비제앙(La Rye-Le Vigeant)에도 새로운 수용소가 설치되었다.<sup>33)</sup> 약 75개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촌락과 수용소가 마련되었다.

알제리를 떠나야 했던 아르키 여성과 아동들의 경우 남성보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바다를 본 적도 없던 여성들은 화물선의 거대한 창고를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아가리'로 기억하였다. 탑승한 배는 악취가 진동했으며 얼마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에 부닥쳤다. 지중해를 건넌 아르키들은 툴롱(Toulon)과 마르세이유(Marseille)의 해군 항구에 도착해 임시 수용소를 향했다. 특히 여성과 노약자는 부자연스러운 환경인 수용소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아르키를 위해 공업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남서부 농촌 지역에 설치된 임시 수용소는 주로 대도시에 근교에 마련된 피에-누아르의 수용소와 지리적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이곳에서의 규율은 군대와 흡사하였다. 알제리에서 인종분리정책으로 인해 도시 내 유럽계와 알제리게 주민의 거주지가

32) *ibid.*, p. 112.

33) 자세한 수용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Fatima Bensnaci-Lancou, Gilles Manceron,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jets*, *op. cit.*, pp. 134-135.

위계적으로 구분되었듯이 프랑스에서도 공공주택이 마련된 좋은 정착환경은 오로지 유럽계 모국송환자만 해당하였다.

1963년 여름, 리베살트 수용소(Camp de Rivesaltes)의 경우 전체 6,748명 중 남성은 1,650명, 여성은 1,557명, 아동은 3,541명이었다. 간단한 텐트 정도로 만들어진 이곳은 1875년 군사시설로 조성된 곳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비시정부는 리베살트 기지를 유대인, 집시, 스페인 망명자들을 수감하는 시설로 활용했다. 전후에는 잠시 독일, 이탈리아의 전쟁포로가 억류된 수용이기도 했다가, 알제리 전쟁이 시작되자 동원된 군인들을 전장으로 보내기 위한 훈련장이 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약 500여 명의 알제리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감된 교도소이기도 하였다. 라르작에 설치된 임시수용소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라르작 알제리 전쟁 이전에는 교화수용소로, 알제리 전쟁 동안에는 감시가 필요한 FLN 조직원들을 수감하는 구치소였다.<sup>34)</sup>

간이 천막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거처로 제공된 수용소에서는 보건, 교육, 주거, 생활, 노동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아르키의 집단적 정착은 심각한 주거문제를 낳았다. 대규모 수용소로 아르키를 집결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정부는 수용소를 재편성하였다. 1960년대 초 모든 모국송환자는 주거에 제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중에서도 아르키에 적합한 정착정책은 부재하여서 더욱 열악하였다.

한편,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가족 단위의 임시적 주거시설에서는 입국한 사람을 다른 장소로 보내기 위한 분류작업이 가족의 구성형태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가부장이 있고 상대적으로 젊어 모든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 둘째 가부장이 나이 든 사람이거나 건강하지 못하고, 아동을 돌보는 여성(이혼, 남편사망, 이산가족)

34) 1962년 6월 내무부 장관은 라르작 수용소에 관해 “군대로부터 넘겨받은 라르작 수용소는 대기 중인 아르키를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르키가 도(département)내에 도착해서 정치적인 혼란이 발생할 모든 경우 라르작 수용소로 이송하는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행정명령을 각 도에 전달하였다. 재인용, Katia Khemache, *Harkis, un passé qui ne passe pas*, op. cit., p. 45. Télégramme de Roger Frey aux préfets le 8 juin, 1962.

이 가부장 역할의 수행하는 가족, 셋째 남성 혼자서 구성된 가족(군 복무를 한 16~18세 미혼남성, 전투에서 다쳤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가족이 알제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남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우선으로 첫 번째 범주의 가족이 공업지대나 남동부 지역에 만들어진 촌락으로 배치되었다. 프랑스 정부에 의해 1만 4천여 명이 75개의 마을로 1만 2천여 명이 20여 개의 북부지역이 도시에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였다. 공업화된 도시의 외곽지역으로 이주한 아르키 주거지는 북아메리카 출신 이주자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었다.

프랑스에 도착한 아르키에 대한 재사회화 정책의 목적은 프랑스 국가의 안보와 친 FLN 사람들로부터 위협받는 아르키의 안전이었다. 위협, 강탈, 종용, 폭력, 살인, 구금 등 아르키가 마주한 녹녹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알제리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작업장으로 아르키를 취업시키는 것은 어려웠다. 아르키는 북아프리카 이주자들에게도 배신자 혹은 외부인이었다.<sup>35)</sup> 정부는 알제리 전쟁의 종결과 함께 알제리인과 프랑스인의 갈등은 사라졌다고 선전하면서, 아르키에 대한 위협은 엄중하게 처벌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몇몇 알제리 이주자와 임시수용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아르키의 경우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프랑스 전국으로 흩어졌다. 이들 중 일부가 알제리 이민자들의 위협으로 인해 다시금 안전한 수용소로 돌아오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북부와 동부의 공업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아르키 중 몇몇은 안전보호 문제로 인해 재수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종전 이후 찾아온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파시즘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알제리 독립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프랑스 인민당(Parti Populaire Français), OAS 등 우익정치세력과 모국귀환자 단체들 사이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였다. 아르키 역시 이러한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프랑스 정부의 아르키 정착정책은 안보, 주거, 직업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35) 아르키 출신 이주 2세대가 느끼는 아르키, 알제리인,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 불안과 프랑스와 알제리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소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시오. Régis Pierret, “Les enfants de harkis, entre triple appartenance et double rejet”, *Hommes et Migrations*, n. 1726(2008); 이영목, 「정체성, 기억, 역사: 아르키와 그 자녀들의 경우」, 『불어불문학연구』, 66집(2006).



당시 구식민지에서 귀환한 알제리 원주민은 국민이 되어야만 온전히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해외 프랑스인, 모국송환자를 프랑스에 통합시키는 것과는 달리 재통합(réintégrer)의 대상이 되었다. 프랑스 법률은 식민지에서 시민을 공통법 지위의 시민(civil de droit commun)과 지역법 지위의 시민(civil de droit local)으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프랑스계, 유대인에게는 전자가, 알제리 무슬림에게는 후자가 적용되었다. 아르키에 대한 프랑스 국적 부여는 식민지체제가 만들어 놓은 차별적 시민권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1962년 7월 행정명령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피에-누아르 등, 식민모국의 후손을 제외하고 알제리 출신의 사람들은 1963년 1월 1일까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한편, 이 행정명령에 따라 알제리인들의 경우 알제리가 주권국가로 독립했기 때문에 196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프랑스 시민권은 포기되었다. 알제리 원주민에 대한 프랑스 시민권의 자동적 폐기는 아르키 박해, 학살이 진행 중이던 알제리에 대해 프랑스가 개입할 여지를 사라지게 했다. 오늘날 아르키 단체들은 독립의 논리적인 결과인 국적 변동을 아르키 학살에 대해 프랑스가 스스로 부여한 법률적 알리바이라 주장한다.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약 59,000명이 프랑스 시민권을 인정받았고, 추가로 약 25,000명의 알제리에서 태어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84,000명의 부모도 프랑스 국적을 획득하였다.

## V. 결론

에비앙협정 체결 직후, 피에-누아르와 달리 원주민 보충병으로 복무한 아르키는 빈번하게 프랑스로의 입국을 거부당하였다. 프랑스 정부가 아르키의 입국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많은 알제리인의 입국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민족적 정체성이 훼손당할 수 있다고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한 알제리 정부가 친프랑스 활동을 한 알제리인들에 대한 보복행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셋째, OAS가 프랑스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를 감행한 것처럼 전쟁

에 참여한 전투원들이 프랑스로 입국하게 되면 프랑스 본국에서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1962년 3월 국방부 장관 메스메르는 아르키에게 프랑스군에 의한 보호가 6개월간 제공될 것이라 약속했지만, 이는 급속한 프랑스로 향하는 아르키의 난민 신청자를 축소하기 위한 기만 행위에 불과하였다.

아르키는 프랑스의 모국송환정책에서 인종적, 계급적 차별을 겪었다. 드골과 알제리 식민정부는 군사작전에 협력한 아르키를 진짜 프랑스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피에-누아르와 달리 아르키에 대한 학생은 프랑스인에 대한 학살이 아니므로 학살의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이러한 인종적 차별과 더불어 계급적 차별은 프랑스에 협력한 알제리의 대표적인 명사들과 군인, 행정가 등은 쉽게 이주의 대상이 되었으나 평범한 아르키, 즉 가난하고 문맹인 농민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입국이 제한적이었던 것에서 잘 나타난다. 프랑스화된 엘리트는 모국송환에서도 아르키와 달리 특권을 누렸다. 흔히 아르키를 무슬림 프랑스인으로 부르지만, 아르키를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잊혀 있었던 아르키의 존재가 프랑스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42만 명에 달하는 아르키와 그 후손들이 국가적 기념사업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들은 프랑스 정부와 군에 의해 버림받았고, 국가의 무책임한 결정과 방기 때문에 알제리에서 학살당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반인륜범죄(*crime contre l'humanité*)를 저질렀다고까지 주장하였다.<sup>36)</sup> “귀국동포를 위한 국가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법”(2005년 2월 23일 법)<sup>37)</sup>이 제정되기까지 아르키는 배신했지만 또한 배신당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 버림받고, 낮은 땅으로 추방된 존재들, 그리하여 이방인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어려운 난민신청 절차를 통과해 겨우 프랑스로 이주했지만, 수용소에서 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아르키는 전쟁 기간에 토벌 작전을 원활히 수행

36) 아르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행위를 국가범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Boussad Azni, *Harkis, crime d'Etat, généalogie d'un abandon* (Paris: Éditions J'ai lu, 2002).

37) 김태수, 「사회운동으로서의 포스트식민주의: 프랑스」공화국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3권(2015), 308쪽.

하고자 만든 원주민수용소에 대규모로 수용되었었는데 모국송환자 정책에 의해 프랑스 땅에서도 다시 수용소로 보내졌다. 알제리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수용소에서 전후 난민이 되어 프랑스로 들어온 그들에게 수용소 생활은 운명이었다. 나아가 수용소 생활은 사회적 통합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아르키는 프랑스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1974년과 1975년에는 대규모 저항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수용소에서 발생할 정도로 프랑스는 그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데 외면해 왔고 실패하였다. 아르키는 눈에 띄지 않고 사라졌으면 좋을 존재였다. 오늘날까지 알제리 전쟁과 알제리 식민화의 실패를 떠올리게 만드는 아르키는 프랑스 공화국 역사에서 얼룩 같은 사람들이다. 대다수 가난한 농민이었던 아르키는 동족을 배신한 프랑스 식민주의의 협력자가 아니라 프랑스와 알제리 지중해 양안으로부터 버림받고 고립된 이방인이다. 따라서 아르키는 때로는 알제리와 프랑스 양쪽 모두의 역사에서 알제리 전쟁을 신화화하고 동시에 탈신화화하는 존재이다.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 mentend@gmail.com

주제어(key words):

아르키(Harki), 알제리 전쟁(Algerian war), 모국송환 정책(policy of repatriate), 식민주의(colonialism)

(투고일: 2020.10.24, 심사일: 2020.11.14, 게재확정일: 2020.11.16)

<국문초록>

알제리 전쟁 이후 아르키(Harki)의 프랑스 이주  
-프랑스의 모국송환자(rapatrié) 정책과 아르키-

문 중 현

프랑스는 아르키를 공식적으로 난민(réfugié)으로 인정했지만, 드골정부는 모든 무슬림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자, 난민지위는 모든 무슬림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알제리에서 생명을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피에-누아르에 대한 모국송환 정책은 상대적으로 무난히 진행된 반면, 알제리계 주민에 대한 이주계획은 난민 선정기준에서부터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는 식민지 독립전쟁과 내전 성격을 동시에 지닌 알제리 전쟁 이후, 민족독립의 배신자로 간주되어 살해, 폭력, 구금, 고문의 위협 때문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난민, 아르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모국송환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르키 부대가 만들어졌던 배경에서부터 아르키 문제가 지닌 다양한 역사적 성격을 검토하고, 종전 후 프랑스의 아르키 문제에 대한 대책과 프랑스로의 이주정책을 프랑스 식민지체제의 영속성 속에서 알아볼 것이다.

<Abstract>

Harki and policy of repatriate after algerian war

Moon Jong-Hyun

This article explores Harki and policy of repatriate after algerian war. Harki is the generic term for native Muslim Algerians who served as auxiliaries in the French Army during the Algerian War of Independence from 1954 to 1962. The word sometimes applies to all Algerian Muslims who supported French Algeria during the war. A principal motive for fighting on the side of the French was to provide for family and protect property, rather than strictly a patriotic devotion to France.

In 1962 the French government of Charles de Gaulle originally ordered officials and army officers to prevent the Harkis from following the Pieds-Noirs and seeking refuge in metropolitan France. Some officers of the French army disobeyed and tried to assist the Harkis under their command - as well as their families - to escape from Algeria. About 90,000 Harkis (including family members) found refuge in France.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Alain Peyrefitte, *C'était de Gaulle* (T. I, Paris: Fayard, 1994).
- Boussad Azni, *Harkis, crime d'Etat, généalogie d'un abandon* (Paris: Éditions J'ai lu, 2002).
- Choi Sung-Eun, *Decolonization and the French of Algeria: Bringing the settler colony home* (London: Palgrave, 2016).
- Fatima Bensnaci-Lancou, Gilles Manceron, *Les harkis dans la colonisation et ses sujets* (Ivry-sur-Seine: Editions de l'Atelier, 2008).
- Fatima Besnaci-Lancou, *Des harkis envoyés à la mort: Le sort des prisonniers de l'Algérie indépendante(1962-1969)*(Paris: Editions de l'Atelier, 2014).
- Guy Pervillé, *Les accords d'Evian (1962) - Succès ou échec de la réconciliation franco-algérienne (1954-2012)* (Paris: Armand Colin, 2012).
- Katia Khemache, *Harkis, un passé qui ne passe pas* (Morlaàs: Cairn, 2018).
- Vicent Crapanzano, traduit. Johan-Frédéric Hel Guedj, *Les harkis: Mémoires sans issue* (Paris: Gallimard, 2012).

### 2. 논문

- 김태수, 「사회운동으로서의 포스트식민주의: 프랑스 "공화국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3권(2015).
- 노서경, 「아르키(Harkis) 문제」,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 2권(2010).
- 이영목, 「정체성, 기억, 역사: 아르키와 그 자녀들의 경우」, 『불어불문

- 학연구』, 66집(2006).
- 이용재, 「에비양협정 50주년을 넘어」, 『역사비평』, 111호(2015, 5).
- Chantal Morelle, “Les pouvoirs publics français et le rapatriement des harkis en 1961-1962”,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83(2004).
- François-Xavier Hautreux, “L’engagement des harkis(1954-1962)”,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 90(2006).
- Michel Roux, “A propos des événements de l’été 1991, le cassette harki”, *Migrations Société*, vol.4, n.20(1992).
- Régis Pierret, “Les enfants de harkis, entre triple appartenance et double rejet”, *Hommes et Migrations*, n. 1726(2008).